

## 일반공급 안내문

### ■ 일반공급 청약 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 거주자에게 공급 -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① 주택형별 1순위 전체(기타지역 포함) 경쟁이 있는 경우,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%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②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
유의사항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(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) 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가점제(100%), 추첨제(0%),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

### ■ 청약가점표

가점항목	총배점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
		1명	10	5명	30
		2명	15	6명 이상	35
		3명	20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## ■ 일반공급 제출서류 [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. 10. 28. 이후 발행분]

구분	필수	추가 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대상	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(단, 1961. 01. 01 이전 출생자는 1961. 01. 01 ~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) ※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(반드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)
	○		신분증	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	○		복무 확인서	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, "상세"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계약용(본인 발급용) ※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
	○		인감도장	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
일반공급 (가점제 당첨자, 가점제 예비입주자)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만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, "상세"로 발급]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○		국내거소신고증		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로 설정(반드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)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로 설정(반드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) -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
○		혼인관계증명서	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	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 입증서류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 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반드시 제출) 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동반 체류 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 10. 28.)로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• 여권 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 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
대리인 제출 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(본인 발급용)
	○		위임장	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○		대리인의 신분증, 인장	대리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(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주택 및 '분양권'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 서류 제출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- '소형 저가주택'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1년 10월 28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 
 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  
 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등-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  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-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